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(2026년)

제1조【 목 적 】

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【 계약기간 】

- ① 계약기간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'을'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'갑'(또는 '병'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'갑'(또는 '병')은 이후 15일 이내에 '을'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'갑'(또는 '병'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.)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⑥ '갑'(또는 '병'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3조[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]

① 입소정원

헤드림실버요양원 입소 정원은 23명으로 한다. 단 특례입소자 1명을 추가로 받을수 있다.
단,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,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 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(특례입소자)를 입소시킬 수 있다. 다만,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. (단, 이용 정원증가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구청의 허가에 따른다.)

② 모집방법

가)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

- 유관센터와 연계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이용 대상자를 파악한다.
-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우선 모집 한다.
-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헤드림실버요양원 홈페이지 등 교차로 등을 이용한다.

(홍보 및 이용상담에 의한 모집) (주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)

(보호자를 통한 모집) (관련시설을 통한 모집,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, 길거리 현

수막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.)

-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 등에 참석하여 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이용자를 확보한다.
-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 (경로잔치, 노인대학 등)와 경로당 방문하거나 시설로 초대하여 홍보하여 모집한다.

나) 입소대상자

-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 대상자 또는 등급 외 본인부담 전액 대상자
-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

제4조【 입소 · 이용료 납부 】

- ①‘갑’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계약당일에 납부하기로 한다.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 선 납부하기로 한다.
- ②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.
- ③‘갑’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.
- ④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.용역의 구입,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.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- ⑤‘갑’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%를 산정하되, 1회당 10일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외박을 원하는 경우 외박수가의 100%를 본인이 부담한다.
- ⑥‘갑’이 외부에서 식사 또는 외부 음식을 원내에서 섭취하여도 이용료에서 식사비, 간식비를 제외 하지 않는다.
- ⑦‘갑’이 입소, 퇴소 당일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100%,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%만 산정한다.

◇노인요양시설급여(단위: 원) (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/ 30일 기준)

적 용	등 급	1일	월	본인부담금			비급여 항목	합계금액(월)			
				일반 (20%)	경감		식재료비	식 이	일반 (20%)	경감	
					12%	8%				12%	8%
□	1	93,070	2,792,100	558,420	335,050	223,360	*일반식 식사:3,000 간식:1,000 경관식 본인부담	일반	945,420	722,050	610,360
								경관	918,420	695,050	583,360
□	2	86,340	2,590,200	518,040	310,820	207,210		일반	905,040	697,820	594,210
								경관	878,040	670,820	567,210

☐	3	81,540	2,446,200	489,240	293,540	195,690		일반	876,240	680,540	582,690
☐	4							경관	849,240	653,540	555,690
☐	5										
☐	등급외자			81,540원/1 일				2,446,200원			
☐	기초수급권자			전액 지원				0원			
☐	상급침실 이용료			1 인실: 3,000원/1 일(월 90,000원)							

- 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감경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한다.
- 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.
- ※ 식사 및 간식 관련비용은 이동급식 전문업체를 통해 시행하므로 별도 비용(비급여)입니다.
- 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.(식사, 간식비는 생계비로 대체됩니다.)

◇계약의사 진료 본인부담 비용(단위: 원) (2026년 1월 1월부터 적용)

진료구분	2026년도 본인부담금(기준)			
	일반(20%)	감경(12%)	감경(8%)	기초생활수급자(0%)
초진비용(18,840원)	3,760	2,260	1,500	0
재진비용(13,370원)	2,670	1,600	1,060	0
의사소견서 발급	20%	10%		0

- ※ 노인요양시설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노인복지법에 따라 계약의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(어르신)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함.
- ※ 계약의사가 ‘갑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, 건강상태가 악화될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의사 진료에 동의여부를 아래와 같이 선택합니다.
(단,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.)
- ☐ 계약의사 진료 동의함 ☐ 계약의사 진료 동의하지 않음
- ☐ 약 처방 조제 및 위탁 동의함 ☐ 약 처방 조제 위탁 동의하지 않음

이에 따른 계약의사 진료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(초진·재진 비용)을 보호자 는(은) 납부 하겠습니다.

<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>		
구분	시설급여	재가급여
일반	□ 20%	15%
기초수급권자	□ 0%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□ 12%	9%
	□ 8%	6%
※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거나 절감된다. 1.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.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		

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1) 기본원칙
①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·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.
②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는 불가능함.
2) 세부기준
①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과 간식을 포함
②상급침실 이용료
-1인실 또는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해야함.
-상급침실은 (a)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노인복지법 시설·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6.6 m ²)을 충족하여야 함.
③이·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·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·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·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능함.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.

◇세부내역(3~5등급 기준/30일 기준)

구 분		금액(원)	내 역
③총 계(①+②=③)		2,833,200	1,956,960+876,240=2,737,200원
요양보험 부담비용	①소 계	1,956,960	
	요양급여비용(80%)	1,956,960	81,540×80%×30일=1,956,960원
개인 부담비용	②소 계	876,240	
	요양급여비용(20%)	489,240	81,540×20%×30일=489,240원
	식사재료비/간식비	300,000	3,000(식사비)×3식×30일=270,000원 +1,000(간식비)×1회×30일=30,000원
	상급침실 이용료	0	

제4조【 계약자 의무 및 권리 】‘갑’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①‘갑’의 의무

- 1.월 이용료 납부
- 2.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구성에 협조
- 3.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
- 4.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- 5.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‘을’의 의무

- 1.‘갑’의 건강관리 협조
- 2.‘갑’의 신변이상을 ‘병’에게 즉시 연락
- 3.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- 4.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- 5.기타 ‘갑’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‘병’의 의무

1. '갑'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'갑'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3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4. '갑'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에게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제5조【 계약해지 요건 】

① '갑'의 해지

1. '갑'과 '병'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'을'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'을'의 해지

1. '갑'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2. '갑'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판단되었을 때
3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4. '병'이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사항에 태만하여 신뢰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
5. '갑'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'을'은 '갑'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'갑' 또는 '병'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제6조【 퇴소 】

① '을'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'갑'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'갑'과 '병'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'을'에게 제출하고 '을'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해야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'병'(또는 '갑')에게 통보 후 '을'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'갑' 또는 '병'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③ '을'은 '갑'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'갑'이 지정한(또는 '병')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.

제7조【 입소물품 】

'갑'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'을'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
제8조【 면회 및 외출·외박 】

① '갑'의 면회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10:00시부터 16:00까지이며,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 (단 '갑'과 '을' 또는 '병'이 면회시간을 협의 할 수 있다).

② '갑'은 외출·외박 시 사전에 '을'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'을'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'갑'이나 '병'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'을'과 협의

후 반입 할 수 있으나, 반입된 음식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'갑' 또는 '병'이 책임진다.

④외출·외박 중 '갑'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'갑' 또는 '병'은 '을'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9조【 시설관리 】

①'을'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'을'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제10조【 건강관리 】

①'을'은 '갑'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'갑' 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'갑'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확인되거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'갑' 또는 '병'에게 별도 징수한다.

④'을'은 입소 시 '갑'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'갑'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해야 하며, '갑'의 건강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.

⑤'을'은 '갑'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⑥'을'은 '갑'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 확인 시 지체 없이 '병'에게 통보한다.

⑦'을'은 '갑'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.

제11조【 시설물 배상 】

①'갑'은 '을'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'갑'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'갑' 또는 '병'이 원상복구 해야 한다.

②'갑' 또는 '병'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 '을'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'갑' 또는 '병'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【 위급 시 조치 】

①'을'은 '갑'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'갑'(또는 '병'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에게 통보해야한다.

②'병'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'갑'이 사망하였을 경우 '을'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'병'에게 통보해야한다. 단, '병'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'을'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④ 위 제3항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'을'은 '갑'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'병'과 정산할 수 있다.

제13조【 임종 및 장례 】

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①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
1.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병'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.장례는 '병'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
②무연고자

1.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을'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
2.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 진행 후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
3.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제14조【 식사 및 간식 】

①식사와 간식을 전량 위탁한 공급업체가 1일 3식 및 간식을 '갑'에게 제공한다.

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식재료비는 '을'이 시·군·구로부터 수납하여 전량 위탁한 전문 업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.

③'을'은 전량 위탁한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'갑'에게 제공하고 게시한다.

제15조【 영양실의 배정 】

'갑'의 영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'갑'의 건강상태, 관리(도움)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'을'이 변경할 수 있으며 '갑' 또는 '병'의 의견을 반영하여 '을'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16조【 개인정보 보호의무 】

①'을'은 '갑'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해야한다.

②'을'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의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
③'갑'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구두 또는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으로 한다.

④'갑'은 '을'이 수집·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
⑤'을'은 가능한 '갑'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7조【 기록 및 공개 】

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8조【 배상책임 】

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을'은 '갑'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
- 1.시설 종사자의 고의로 인하여 '갑'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2.약을 잘못 투약하여 '갑'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3.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'갑'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4.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.)로 인하여 '갑'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과 '병'은 '을'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- 1.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- 2.입소 생활 중 '갑'의 노환으로 인한 질환 발생 및 질환 악화
- 3.'을'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'갑'의 외출·외박·무단이탈 등으로 사고와 사망이 발생하였을 때
- 4.입소 생활 중 '갑'의 단독보행(이동)으로 인한 낙상과 생활실(침대), 로비, 화장실에서의 단독 낙상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
- 5.'갑'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- 6.'갑'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- 7.입소자 간의 다툼으로 인한 상해일 경우 입소자 당사자 간에 배상책임으로 한다.

제19조【 이용계약서의 해석 】

-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

[출처] 헤드림실버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사항 (2026년) 작성자 윤주성